경상북도

도보
www.gb.go.kr

선람	기관(부서)의 장

제6526호 2021년 4월 12일(월)

경 상 북 도

■ 고 시

○ 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125호) ····· 5

회람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126호) ····· 6

○ 사방지 지정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1-127호) ····· 35

■ 공 고

○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809호) ····· 42

○ 도로공사 시행허가(변경) 내용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810호) ····· 43

○ 개각 공인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811호) ····· 44

○ 경상북도 문화재수리업등 등록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812호) ····· 46

○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815호) ····· 47

○ 측량업 등록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817호) ····· 75

○ 「2021년 경상북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참가분임조 모집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818호) ····· 76

○ 신문 등 직권등록취소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819호) ····· 82

○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823호) ····· 88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1-824호) ····· 89

시 군

■ 고 시

○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구미시 고시 제2021-68호) ····· 92

○ 경산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경산시 고시 제2021-63호) ····· 95

◈◈◈

경상북도 고시 제2021 - 125호

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도로의 종류	국지도	**노선번호**	79호	**노선명**	창령-안동
접도구역의 해제구간 및 범위	○ 위치 : 군위군 부계면 춘산리 181-2일원(약 0.1㎞) ○ 접도구역 변경 현황 - 붙임「접도구역 변경 위치도」참고				
접도구역 해제사유	○ 「도로법」시행규칙 제15조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제3항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으로 주민 재산권보호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접도구역을 일부 해제하고자 함				
비고					

첨부서류 :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1부(생략, 공람장소 비치)

경상북도 고시 제2021 -126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방지 지정해제 내역 : 『붙임』 내역과 같음

2. 사방지 지정해제 사유 : 사방지 지정 목적달성

3. 사방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게재 생략한 사방지 지정해제 지형도면은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 (☎ 054-420-870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사방지 지정해제 [목적달성] 고시 내역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현황			지정해제 고시면적 (㎡)	해제 사유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정 면적 (㎡)	지정년월일 (고시번호)	사업 종류			
합계			359필지		19,657,565	92,587			92,587		
김천계			105		2,118,423	24,303			24,303		
김천	대덕	대리	101	임야	3,039	106	2012-08-27 (258호)	산림유역관리	106	목적달성	
김천	대덕	대리	138	전	263	85	2012-08-27 (258호)	산림유역관리	85	목적달성	
김천	대덕	대리	141	임야	3,604	17	2012-08-27 (258호)	산림유역관리	17	목적달성	
김천	대덕	대리	155	임야	3,290	69	2012-08-27 (258호)	산림유역관리	69	목적달성	
김천	대덕	대리	157	임야	264	28	2012-08-27 (258호)	산림유역관리	28	목적달성	
김천	대덕	대리	178	임야	121	65	2012-08-27 (258호)	산림유역관리	65	목적달성	
김천	대덕	대리	191	임야	368	107	2012-08-27 (258호)	산림유역관리	107	목적달성	
김천	대덕	대리	192	임야	2,839	1,004	2012-08-27 (258호)	산림유역관리	1,004	목적달성	
김천	대덕	대리	193	임야	157	130	2012-08-27 (258호)	산림유역관리	130	목적달성	
김천	대덕	대리	244-2	전	1,376	34	2012-08-27 (258호)	산림유역관리	34	목적달성	
김천	대덕	대리	252	임야	612	70	2012-08-27 (258호)	산림유역관리	70	목적달성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현황			지정해제 고시면적 (㎡)	해제 사유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정 면적 (㎡)	지정년월일 (고시번호)	사업 종류			
김천	대덕	대리	1092	하천	9,945	1,933	2012-08-27 (258호)	산림유역관리	1,933	목적달성	
김천	대덕	대리	1096	하천	21,379	1,306	2012-08-27 (258호)	산림유역관리	1,306	목적달성	
김천	대덕	대리	산22	임야	548,749	2,759	2012-08-27 (258호)	산림유역관리	2,759	목적달성	
김천	대덕	대리	산26	임야	52,959	443	2012-08-27 (258호)	산림유역관리	443	목적달성	
김천	대덕	대리	산41	임야	7,269	218	2012-08-27 (258호)	산림유역관리	218	목적달성	
김천	대덕	대리	산127	구거	2,343	18	2012-08-27 (258호)	산림유역관리	18	목적달성	
김천	대덕	대리	산129	구거	1,224	16	2012-08-27 (258호)	산림유역관리	16	목적달성	
김천	대덕	대리	산131	구거	11,247	1,295	2012-08-27 (258호)	산림유역관리	1,295	목적달성	
김천	감문	도명	산32	임야	15,930	1,080	2015-12-07 (428호)	산지사방	1,080	목적달성	
김천	구성	흥평	580	답	3,739	6	2015-12-07 (428호)	계류보전	6	목적달성	
김천	구성	흥평	607	답	562	27	2015-12-07 (428호)	계류보전	27	목적달성	
김천	구성	흥평	929	구	4,375	25	2015-12-07 (428호)	계류보전	25	목적달성	
김천	구성	흥평	산108	임야	276,516	231	2015-12-07 (428호)	계류보전	231	목적달성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현황			지정해제 고시면적 (㎡)	해제 사유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정 면적 (㎡)	지정년월일 (고시번호)	사업 종류			
김천	구성	흥평	산215	구	2,175	247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247	목적 달성	
김천	농소	입석	1046	전	1,356	41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41	목적 달성	
김천	농소	입석	산17	임야	909	6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6	목적 달성	
김천	농소	입석	산18-1	임야	13,431	131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131	목적 달성	
김천	농소	입석	산125	구	3,254	2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2	목적 달성	
김천	구성	흥평	산219	도	1,325	6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6	목적 달성	
김천	구성	흥평	932	구	4,007	481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481	목적 달성	
김천	구성	흥평	933	도	407	2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2	목적 달성	
김천	구성	흥평	555	임야	324	1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1	목적 달성	
김천	구성	흥평	557	임야	1,142	18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18	목적 달성	
김천	구성	흥평	558	임야	131	4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4	목적 달성	
김천	구성	흥평	559	임야	607	56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56	목적 달성	
김천	구성	흥평	563	답	1,550	32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32	목적 달성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현황			지정해제 고시면적 (㎡)	해제 사유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정 면적 (㎡)	지정년월일 (고시번호)	사업 종류			
김천	구성	흥평	564	임야	56	31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31	목적 달성	
김천	구성	흥평	565	답	802	3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3	목적 달성	
김천	남면	운곡	1125-1	천	387,009	803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803	목적 달성	
김천	남면	운곡	816	답	1,045	33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33	목적 달성	
김천	농소	입석	1391-36	구	26,980	5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5	목적 달성	
김천	농소	입석	231	전	1,442	35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35	목적 달성	
김천	농소	입석	산8	임야	8,034	821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821	목적 달성	
김천	농소	입석	산8-1	임야	6,974	120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120	목적 달성	
김천	조마	신곡	84-1	답	849	134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134	목적 달성	
김천	조마	신곡	산106-1	임야	60,596	148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148	목적 달성	
김천	조마	신곡	105	답	1,744	34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34	목적 달성	
김천	조마	신곡	산87-1	임야	19,134	132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132	목적 달성	
김천	조마	신곡	108	답	913	23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23	목적 달성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현황			지정해제 고시면적 (㎡)	해제 사유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정 면적 (㎡)	지정년월일 (고시번호)	사업 종류			
김천	남면	오봉	596	전	1,603	34	2015-12-07 (428호)	사방댐	34	목적 달성	
김천	남면	오봉	산124	임야	23,744	220	2015-12-07 (428호)	사방댐	220	목적 달성	
김천	남면	오봉	산125	임야	8,647	159	2015-12-07 (428호)	사방댐	159	목적 달성	
김천	남면	오봉	산483	구	4,425	567	2015-12-07 (428호)	사방댐	567	목적 달성	
김천	농소	봉곡	산21-1	임야	11,760	333	2015-12-07 (428호)	사방댐	333	목적 달성	
김천	농소	봉곡	산22-1	임야	8,790	205	2015-12-07 (428호)	사방댐	205	목적 달성	
김천	농소	봉곡	산166	구	23,166	511	2015-12-07 (428호)	사방댐	511	목적 달성	
김천	농소	봉곡	1511	천	15,896	598	2015-12-07 (428호)	사방댐	598	목적 달성	
김천	농소	봉곡	산46-1	임야	161,321	11	2015-12-07 (428호)	사방댐	11	목적 달성	
김천	농소	봉곡	산52	임야	2,750	3	2015-12-07 (428호)	사방댐	3	목적 달성	
김천	농소	봉곡	산166	구	23,166	299	2015-12-07 (428호)	사방댐	299	목적 달성	
김천	농소	봉곡	산201	구	6,778	822	2015-12-07 (428호)	사방댐	822	목적 달성	
김천	농소	입석	231	전	1,442	35	2015-12-07 (428호)	사방댐	35	목적 달성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현황			지정해제 고시면적 (㎡)	해제 사유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정 면적 (㎡)	지정년월일 (고시번호)	사업 종류			
김천	농소	입석	1391-36	구	26,980	5	2015-12-07 (428호)	사방댐	5	목적 달성	
김천	농소	입석	산8	임야	8,034	821	2015-12-07 (428호)	사방댐	821	목적 달성	
김천	농소	입석	산8-1	임야	6,974	120	2015-12-07 (428호)	사방댐	120	목적 달성	
김천	아포	국사	산65	구	26,240	819	2015-12-07 (428호)	사방댐	819	목적 달성	
김천	아포	국사	924-25	천	22,889	624	2015-12-07 (428호)	사방댐	624	목적 달성	
김천	어모	은기	565-2	답	2,189	34	2015-12-07 (428호)	사방댐	34	목적 달성	
김천	어모	은기	산14-1	임야	83,194	139	2015-12-07 (428호)	사방댐	139	목적 달성	
김천	어모	은기	산139	구	16,797	940	2015-12-07 (428호)	사방댐	940	목적 달성	
김천	조마	신곡	1616	구	20,958	513	2015-12-07 (428호)	사방댐	513	목적 달성	
김천	조마	신곡	1140-2	천	841	152	2015-12-07 (428호)	사방댐	152	목적 달성	
김천	조마	신곡	1144	임야	30	10	2015-12-07 (428호)	사방댐	10	목적 달성	
김천	조마	신곡	1145	천	113	56	2015-12-07 (428호)	사방댐	56	목적 달성	
김천	조마	신곡	산90	임야	33,913	4	2015-12-07 (428호)	사방댐	4	목적 달성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현황			지정해제 고시면적 (㎡)	해제 사유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정 면적 (㎡)	지정년월일 (고시번호)	사업 종류			
김천	조마	신곡	산91	임야	23,489	60	2015-12-07 (428호)	사방댐	60	목적 달성	
김천	조마	신곡	91-1	임야	484	67	2015-12-07 (428호)	사방댐	67	목적 달성	
김천	조마	신곡	93	전	923	7	2015-12-07 (428호)	사방댐	7	목적 달성	
김천	조마	신곡	94-2	전	523	30	2015-12-07 (428호)	사방댐	30	목적 달성	
김천	조마	신곡	95	답	381	3	2015-12-07 (428호)	사방댐	3	목적 달성	
김천	조마	신곡	96	전	223	4	2015-12-07 (428호)	사방댐	4	목적 달성	
김천	증산	장전	986	구	1,708	363	2015-12-07 (428호)	사방댐	363	목적 달성	
김천	증산	장전	987	도	10	5	2015-12-07 (428호)	사방댐	5	목적 달성	
김천	증산	장전	988	도	51	24	2015-12-07 (428호)	사방댐	24	목적 달성	
김천	증산	장전	989	도	574	15	2015-12-07 (428호)	사방댐	15	목적 달성	
김천	증산	장전	992	도	95	4	2015-12-07 (428호)	사방댐	4	목적 달성	
김천	증산	장전	산112	도	109	4	2015-12-07 (428호)	사방댐	4	목적 달성	
김천	증산	장전	76	대	287	82	2015-12-07 (428호)	사방댐	82	목적 달성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현황			지정해제 고시면적 (㎡)	해제 사유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정 면적 (㎡)	지정년월일 (고시번호)	사업 종류			
김천	증산	장전	77	임야	307	86	2015-12-07 (428호)	사방댐	86	목적 달성	
김천	증산	장전	78	임야	187	56	2015-12-07 (428호)	사방댐	56	목적 달성	
김천	증산	장전	156-2	대	387	7	2015-12-07 (428호)	사방댐	7	목적 달성	
김천	증산	장전	157	대	438	7	2015-12-07 (428호)	사방댐	7	목적 달성	
김천	증산	장전	158	임야	179	123	2015-12-07 (428호)	사방댐	123	목적 달성	
김천	증산	장전	160	임야	181	10	2015-12-07 (428호)	사방댐	10	목적 달성	
김천	증산	장전	161	임야	252	78	2015-12-07 (428호)	사방댐	78	목적 달성	
김천	증산	장전	162	임야	143	19	2015-12-07 (428호)	사방댐	19	목적 달성	
김천	지례	울곡	776	임야	1,200	63	2015-12-07 (428호)	사방댐	63	목적 달성	
김천	지례	울곡	817	답	380	34	2015-12-07 (428호)	사방댐	34	목적 달성	
김천	지례	울곡	818-1	답	605	64	2015-12-07 (428호)	사방댐	64	목적 달성	
김천	지례	울곡	818-2	임야	558	289	2015-12-07 (428호)	사방댐	289	목적 달성	
김천	지례	울곡	819	임야	2,213	14	2015-12-07 (428호)	사방댐	14	목적 달성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현황			지정해제 고시면적 (㎡)	해제 사유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정 면적 (㎡)	지정년월일 (고시번호)	사업 종류			
김천	지례	울곡	820	전	868	112	2015-12-07 (428호)	사방댐	112	목적 달성	
김천	지례	울곡	822-4	구	123	6	2015-12-07 (428호)	사방댐	6	목적 달성	
김천	지례	울곡	1165	구	20,539	212	2015-12-07 (428호)	사방댐	212	목적 달성	
구미 계			44		1,606,728	10,417			10,417		
구미	산동	성수	산32	임야	5,496	956	2015-12-07 (428호)	산지 사방	956	목적 달성	
구미	산동	성수	485	전	517	45	2015-12-07 (428호)	산지 사방	45	목적 달성	
구미	도개	동산	산159	구	5,325	897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897	목적 달성	
구미	도개	동산	산4-2	임야	18,412	80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80	목적 달성	
구미	도개	동산	산4-5	임야	20,723	161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161	목적 달성	
구미	도개	동산	산4-7	임야	9,540	25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25	목적 달성	
구미	선산	봉곡	709	구	29,261	1,161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1,161	목적 달성	
구미	선산	봉곡	710	도	1,244	19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19	목적 달성	
구미	선산	봉곡	331	전	1,353	5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5	목적 달성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현황			지정해제 고시면적 (㎡)	해제 사유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정 면적 (㎡)	지정년월일 (고시번호)	사업 종류			
구미	선산	봉곡	332-1	전	1,600	13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13	목적 달성	
구미	선산	봉곡	332-2	전	1,234	8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8	목적 달성	
구미	선산	봉곡	333	묘	2,855	165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165	목적 달성	
구미	선산	봉곡	347	전	1,204	4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4	목적 달성	
구미	선산	봉곡	357-2	전	1,226	29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29	목적 달성	
구미	선산	봉곡	360	전	1,399	1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1	목적 달성	
구미		부곡	산43	구	7,044	940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940	목적 달성	
구미		부곡	산9	임야	185,858	532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532	목적 달성	
구미		부곡	산8-4	임야	4,699	44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44	목적 달성	
구미		부곡	산5-2	임야	61,046	174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174	목적 달성	
구미		부곡	592	임야	159	3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3	목적 달성	
구미	무을	무수	산41	임야	58,767	62	2015-12-07 (428호)	사방댐	71	목적 달성	
구미	무을	무수	산41-1	임야	1,147	16	2015-12-07 (428호)	사방댐	7	목적 달성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현황			지정해제 고시면적 (㎡)	해제 사유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정 면적 (㎡)	지정년월일 (고시번호)	사업 종류			
구미	무을	무수	산44	임야	60,185	788	2015-12-07 (428호)	사방댐	788	목적 달성	
구미	무을	무수	산185	구	3,496	191	2015-12-07 (428호)	사방댐	191	목적 달성	
구미	무을	무수	1203	구	4,573	343	2015-12-07 (428호)	사방댐	343	목적 달성	
구미	무을	무수	483-3	답	541	14	2015-12-07 (428호)	사방댐	14	목적 달성	
구미	무을	무수	산36	임야	15,252	66	2015-12-07 (428호)	사방댐	66	목적 달성	
구미	무을	무수	산186	구	1,802	6	2015-12-07 (428호)	사방댐	6	목적 달성	
구미	선산	봉곡	709	구	29,261	528	2015-12-07 (428호)	사방댐	528	목적 달성	
구미	선산	봉곡	376	묘	2,934	16	2015-12-07 (428호)	사방댐	16	목적 달성	
구미	옥성	농소	1094	천	6,834	252	2015-12-07 (428호)	사방댐	252	목적 달성	
구미	옥성	농소	산107	구	5,201	381	2015-12-07 (428호)	사방댐	381	목적 달성	
구미	옥성	농소	산72-1	임야	941,397	589	2015-12-07 (428호)	사방댐	589	목적 달성	
구미	옥성	태봉	1000	답	764	60	2015-12-07 (428호)	사방댐	60	목적 달성	
구미	옥성	태봉	1002	답	274	44	2015-12-07 (428호)	사방댐	44	목적 달성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현황			지정해제 고시면적 (㎡)	해제 사유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정 면적 (㎡)	지정년월일 (고시번호)	사업 종류			
구미	옥성	태봉	1046	천	43,551	760	2015-12-07 (428호)	사방댐	760	목적 달성	
구미	옥성	태봉	1080	도	1,064	7	2015-12-07 (428호)	사방댐	7	목적 달성	
구미	옥성	태봉	산102-7	임야	31,007	94	2015-12-07 (428호)	사방댐	94	목적 달성	
구미	선산	봉곡	361-2	전	652	2	2015-12-07 (428호)	사방댐	2	목적 달성	
구미	선산	봉곡	375	전	2,005	53	2015-12-07 (428호)	사방댐	53	목적 달성	
구미	선산	봉곡	709	구	29,261	787	2015-12-07 (428호)	사방댐	787	목적 달성	
구미	선산	봉곡	710	도	1,244	23	2015-12-07 (428호)	사방댐	23	목적 달성	
구미	선산	봉곡	산30	임야	4,553	48	2015-12-07 (428호)	사방댐	48	목적 달성	
구미	선산	봉곡	산53	구	768	25	2015-12-07 (428호)	사방댐	25	목적 달성	
상주 계			32		5,422,467	10,944			10,944		
상주	외서	예의	산58	임야	94,821	376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376	목적 달성	
상주	외서	예의	산64	임야	37,936	216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216	목적 달성	
상주	외서	예의	산65	임야	38,869	33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33	목적 달성	
상주	외서	예의	434-3	구거	2,588	217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217	목적 달성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현황			지정해제 고시면적 (㎡)	해제 사유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정 면적 (㎡)	지정년월일 (고시번호)	사업 종류			
상주	외서	예의	460	도	865	32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32	목적 달성	
상주	외서	예의	462	도	416	198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198	목적 달성	
상주	외서	예의	177	답	589	51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51	목적 달성	
상주	청리	청상	1217	구	1,265	429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429	목적 달성	
상주	청리	청상	1215	천	65,440	245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245	목적 달성	
상주	청리	청상	산90-1	임야	33,376	459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459	목적 달성	
상주	청리	청상	산16-1	임야	2,778	174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174	목적 달성	
상주	청리	청상	산178	구	3,613	265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265	목적 달성	
상주	화남	동관	산58-1	임야	1,084,373	1,019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1,019	목적 달성	
상주	화남	동관	180-1	전	277	30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30	목적 달성	
상주	화남	동관	산189	구	2,876	228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228	목적 달성	
상주	화남	동관	592	천	82,726	203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203	목적 달성	
상주	화서	하송	산17	임야	150,103	908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908	목적 달성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현황			지정해제 고시면적 (㎡)	해제 사유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정 면적 (㎡)	지정년월일 (고시번호)	사업 종류			
상주	화서	하송	156	답	2,291	88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88	목적 달성	
상주	화서	하송	산19-1	임야	139,640	658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658	목적 달성	
상주	외남	송지	산70	임야	10,891	65	2015-12-07 (428호)	사방댐	65	목적 달성	
상주	외남	송지	산73	임야	203,236	773	2015-12-07 (428호)	사방댐	773	목적 달성	
상주	외남	송지	416	전	972	29	2015-12-07 (428호)	사방댐	29	목적 달성	
상주	화북	상오	산8	임야	128,762	29	2015-12-07 (428호)	사방댐	29	목적 달성	
상주	화북	상오	산8-8	임야	13,105	621	2015-12-07 (428호)	사방댐	621	목적 달성	
상주	화북	상오	산9-1	임야	1,875,541	98	2015-12-07 (428호)	사방댐	98	목적 달성	
상주	화서	봉촌	산30-1	임야	395,436	615	2015-12-07 (428호)	사방댐	615	목적 달성	
상주	화서	봉촌	산55	구	279	8	2015-12-07 (428호)	사방댐	8	목적 달성	
상주	화서	봉촌	산29	임야	215,045	116	2015-12-07 (428호)	사방댐	116	목적 달성	
상주	화서	봉촌	199-3	답	1,562	346	2015-12-07 (428호)	사방댐	346	목적 달성	
상주	화서	상곡	산167	구	7,960	325	2015-12-07 (428호)	사방댐	325	목적 달성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현황			지정해제 고시면적 (㎡)	해제 사유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정 면적 (㎡)	지정년월일 (고시번호)	사업 종류			
상주	화서	상곡	산21	임야	685,196	1,182	2015-12-07 (428호)	사방댐	1,182	목적 달성	
상주	화서	하송	산19-1	임야	139,640	908	2015-12-07 (428호)	사방댐	908	목적 달성	
군위 계			31		2,765,762	14,997			14,997		
군위	고로	화북	1127-1	천	436,727	1,401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1,401	목적 달성	
군위	고로	화북	산79	임야	21,741	594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594	목적 달성	
군위	고로	화북	산82	임야	51,296	862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862	목적 달성	
군위	고로	화북	산83	임야	81,425	484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484	목적 달성	
군위	고로	화북	산85	임야	25,741	754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754	목적 달성	
군위	고로	화북	1127-1	천	436,727	1,202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1,202	목적 달성	
군위	고로	화북	651	전	1,452	133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133	목적 달성	
군위	고로	화북	산83	임야	81,425	1,202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1,202	목적 달성	
군위	고로	화북	산86	임야	19,469	142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142	목적 달성	
군위	부계	춘산	산137	구	4,837	558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558	목적 달성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현황			지정해제 고시면적 (㎡)	해제 사유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정 면적 (㎡)	지정년월일 (고시번호)	사업 종류			
군위	부계	춘산	1000	구	7,057	615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615	목적 달성	
군위	고로	화북	1127-1	천	439,460	2,848	2015-12-07 (428호)	사방댐	2,848	목적 달성	
군위	부계	춘산	1000	구	7,057	877	2015-12-07 (428호)	사방댐	877	목적 달성	
군위	부계	춘산	923	답	569	2	2015-12-07 (428호)	사방댐	2	목적 달성	
군위	부계	춘산	935	임야	176	49	2015-12-07 (428호)	사방댐	49	목적 달성	
군위	부계	춘산	937	전	145	87	2015-12-07 (428호)	사방댐	87	목적 달성	
군위	부계	춘산	938	답	1,906	18	2015-12-07 (428호)	사방댐	18	목적 달성	
군위	부계	춘산	산67-2	임야	324,366	224	2015-12-07 (428호)	사방댐	224	목적 달성	
군위	부계	춘산	산69	임야	11,666	158	2015-12-07 (428호)	사방댐	158	목적 달성	
군위	소보	도산	산185	구	22,250	168	2015-12-07 (428호)	사방댐	168	목적 달성	
군위	소보	도산	산69	임야	41,798	486	2015-12-07 (428호)	사방댐	486	목적 달성	
군위	소보	도산	산85	임야	309,149	201	2015-12-07 (428호)	사방댐	201	목적 달성	
군위	소보	평호	산182	구	3,268	196	2015-12-07 (428호)	사방댐	196	목적 달성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현황			지정해제 고시면적 (㎡)	해제 사유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정 면적 (㎡)	지정년월일 (고시번호)	사업 종류			
군위	소보	평호	산45	임야	121,396	41	2015-12-07 (428호)	사방댐	41	목적 달성	
군위	소보	평호	산55	임야	68,895	235	2015-12-07 (428호)	사방댐	235	목적 달성	
군위	소보	평호	산56	임야	36,139	245	2015-12-07 (428호)	사방댐	245	목적 달성	
군위	소보	평호	산57	임야	71,889	61	2015-12-07 (428호)	사방댐	61	목적 달성	
군위	소보	평호	산180	구	2,778	618	2015-12-07 (428호)	사방댐	618	목적 달성	
군위	소보	평호	산57	임야	71,889	168	2015-12-07 (428호)	사방댐	168	목적 달성	
군위	소보	평호	산84-1	임야	3,528	79	2015-12-07 (428호)	사방댐	79	목적 달성	
군위	소보	평호	산85	임야	59,541	289	2015-12-07 (428호)	사방댐	289	목적 달성	
고령 계			23		3,189,879	7,520			7,520		
고령	대가야	저전	918-3	구	7,929	1,008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1,008	목적 달성	
고령	덕곡	용흥	547-1	천	96,343	1,682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1,682	목적 달성	
고령	덕곡	용흥	138-1	천	299	23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23	목적 달성	
고령	덕곡	용흥	131	천	903	234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234	목적 달성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현황			지정해제 고시면적 (㎡)	해제 사유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정 면적 (㎡)	지정년월일 (고시번호)	사업 종류			
고령	운수	화암	산3	임야	91,513	907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907	목적 달성	
고령	운수	화암	산7-1	임야	5,491	3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3	목적 달성	
고령	운수	화암	산157	구	892	24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24	목적 달성	
고령	운수	화암	1195	천	602	45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45	목적 달성	
고령	운수	화암	1196-63	천	15,677	1,192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1,192	목적 달성	
고령	개진	구곡	산107	임야	39,219	11	2015-12-07 (428호)	사방댐	11	목적 달성	
고령	개진	구곡	산108	임야	14,835	12	2015-12-07 (428호)	사방댐	12	목적 달성	
고령	개진	구곡	산123	임야	2,320	56	2015-12-07 (428호)	사방댐	56	목적 달성	
고령	개진	구곡	산129	임야	49,293	12	2015-12-07 (428호)	사방댐	12	목적 달성	
고령	개진	구곡	990-16	천	11,483	665	2015-12-07 (428호)	사방댐	665	목적 달성	
고령	개진	구곡	932	전	2,338	13	2015-12-07 (428호)	사방댐	13	목적 달성	
고령	대가야	지산	산89	임야	208,555	372	2015-12-07 (428호)	사방댐	372	목적 달성	
고령	대가야	지산	산98	임야	44,152	54	2015-12-07 (428호)	사방댐	54	목적 달성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현황			지정해제 고시면적 (㎡)	해제 사유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정 면적 (㎡)	지정년월일 (고시번호)	사업 종류			
고령	대가야	지산	산99	임야	57,346	127	2015-12-07 (428호)	사방댐	127	목적 달성	
고령	쌍림	산주	797-1	천	168,865	192	2015-12-07 (428호)	사방댐	192	목적 달성	
고령	쌍림	산주	산38	임야	1,101,269	269	2015-12-07 (428호)	사방댐	269	목적 달성	
고령	쌍림	산주	산38	임야	1,101,269	459	2015-12-07 (428호)	사방댐	459	목적 달성	
고령	쌍림	산주	797-1	천	168,865	78	2015-12-07 (428호)	사방댐	78	목적 달성	
고령	쌍림	산주	785	전	421	82	2015-12-07 (428호)	사방댐	82	목적 달성	
성주계			72		2,573,125	14,277	-	-	14,277		
성주	수륜	백운	산143	임야	27,978	41	2015-12-07 (428호)	산지 사방	41	목적 달성	
성주	수륜	백운	178	전	1,219	584	2015-12-07 (428호)	산지 사방	584	목적 달성	
성주	수륜	백운	188	답	394	9	2015-12-07 (428호)	산지 사방	9	목적 달성	
성주	수륜	백운	189	전	66	7	2015-12-07 (428호)	산지 사방	7	목적 달성	
성주	수륜	백운	1907	구	4,152	231	2015-12-07 (428호)	산지 사방	231	목적 달성	
성주	수륜	백운	1918	도	1,375	151	2015-12-07 (428호)	산지 사방	151	목적 달성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현황			지정해제 고시면적 (㎡)	해제 사유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정 면적 (㎡)	지정년월일 (고시번호)	사업 종류			
성주	수륜	백운	산281	임야	273	272	2015-12-07 (428호)	산지 사방	272	목적 달성	
성주	수륜	백운	산283	임야	205	56	2015-12-07 (428호)	산지 사방	56	목적 달성	
성주	수륜	백운	산285	임야	11,934	382	2015-12-07 (428호)	산지 사방	382	목적 달성	
성주	수륜	백운	99	답	5,491	464	2015-12-07 (428호)	산지 사방	464	목적 달성	
성주	수륜	백운	99-1	전	581	541	2015-12-07 (428호)	산지 사방	541	목적 달성	
성주	수륜	백운	104	유	1,195	80	2015-12-07 (428호)	산지 사방	80	목적 달성	
성주	수륜	백운	111	답	5,403	87	2015-12-07 (428호)	산지 사방	87	목적 달성	
성주	수륜	백운	1903	천	171,752	24	2015-12-07 (428호)	산지 사방	24	목적 달성	
성주	벽진	매수	775	전	768	2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2	목적 달성	
성주	벽진	매수	산51	임야	11,708	16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16	목적 달성	
성주	벽진	매수	산53-3	임야	65,954	14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14	목적 달성	
성주	벽진	매수	산116	구	1,628	89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89	목적 달성	
성주	벽진	봉학	1242	구	4,774	679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679	목적 달성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현황			지정해제 고시면적 (㎡)	해제 사유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정 면적 (㎡)	지정년월일 (고시번호)	사업 종류			
성주	벽진	봉학	330	답	942	8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8	목적 달성	
성주	벽진	봉학	332	답	1,859	31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31	목적 달성	
성주	벽진	봉학	333	전	77	5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5	목적 달성	
성주	벽진	봉학	산95	임야	719,999	4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4	목적 달성	
성주	수륜	백운	산87	임야	8,823	338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338	목적 달성	
성주	수륜	백운	산88	임야	7,470	114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114	목적 달성	
성주	수륜	백운	산85	임야	25,580	144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144	목적 달성	
성주	수륜	백운	산85-2	임야	1,754	2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2	목적 달성	
성주	용암	중거	산104	임야	908	49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49	목적 달성	
성주	용암	중거	산106	임야	11,140	181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181	목적 달성	
성주	용암	중거	591	답	1,593	65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65	목적 달성	
성주	용암	중거	595	구	35	22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22	목적 달성	
성주	용암	중거	596	구	171	54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54	목적 달성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현황			지정해제 고시면적 (㎡)	해제 사유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정 면적 (㎡)	지정년월일 (고시번호)	사업 종류			
성주	용암	중거	602	대	186	15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15	목적 달성	
성주	용암	중거	767	천	38,497	528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528	목적 달성	
성주	가천	신계	1133	천	167,958	1,730	2015-12-07 (428호)	사방댐	1,730	목적 달성	
성주	가천	신계	산106	임야	234,894	26	2015-12-07 (428호)	사방댐	26	목적 달성	
성주	가천	용사	산121-10	임야	27,721	1,127	2015-12-07 (428호)	사방댐	1,127	목적 달성	
성주	가천	용사	산167	구	2,714	1,024	2015-12-07 (428호)	사방댐	1,024	목적 달성	
성주	가천	용사	산121-1	임야	8,257	10	2015-12-07 (428호)	사방댐	10	목적 달성	
성주	금수	광산	산47	임야	50,355	143	2015-12-07 (428호)	사방댐	143	목적 달성	
성주	금수	광산	산130	도	1,089	39	2015-12-07 (428호)	사방댐	39	목적 달성	
성주	금수	광산	385	답	453	1	2015-12-07 (428호)	사방댐	1	목적 달성	
성주	금수	광산	386	답	1,199	5	2015-12-07 (428호)	사방댐	5	목적 달성	
성주	금수	광산	1177	구	8,924	207	2015-12-07 (428호)	사방댐	207	목적 달성	
성주	금수	명천	1297	구	21,891	621	2015-12-07 (428호)	사방댐	621	목적 달성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현황			지정해제 고시면적 (㎡)	해제 사유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정 면적 (㎡)	지정년월일 (고시번호)	사업 종류			
성주	금수	명천	721	임야	1,015	24	2015-12-07 (428호)	사방댐	24	목적 달성	
성주	금수	명천	722	답	402	18	2015-12-07 (428호)	사방댐	18	목적 달성	
성주	금수	명천	723	답	58	19	2015-12-07 (428호)	사방댐	19	목적 달성	
성주	금수	명천	724	답	90	26	2015-12-07 (428호)	사방댐	26	목적 달성	
성주	금수	명천	728	전	1,896	4	2015-12-07 (428호)	사방댐	4	목적 달성	
성주	금수	명천	729-1	답	71	1	2015-12-07 (428호)	사방댐	1	목적 달성	
성주	금수	명천	729-2	답	262	18	2015-12-07 (428호)	사방댐	18	목적 달성	
성주	금수	명천	산281	구	355	1	2015-12-07 (428호)	사방댐	1	목적 달성	
성주	대가	칠봉	산62	도	7,745	966	2015-12-07 (428호)	사방댐	966	목적 달성	
성주	대가	칠봉	986	천	14,102	327	2015-12-07 (428호)	사방댐	327	목적 달성	
성주	대가	칠봉	산31-8	임야	90,708	42	2015-12-07 (428호)	사방댐	42	목적 달성	
성주	대가	칠봉	산31-9	임야	279,663	26	2015-12-07 (428호)	사방댐	26	목적 달성	
성주	용암	마월	978	구	86,465	257	2015-12-07 (428호)	사방댐	257	목적 달성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현황			지정해제 고시면적 (㎡)	해제 사유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정 면적 (㎡)	지정년월일 (고시번호)	사업 종류			
성주	용암	마월	산33	임야	22,927	112	2015-12-07 (428호)	사방댐	112	목적 달성	
성주	용암	마월	산31-3	임야	2,618	112	2015-12-07 (428호)	사방댐	112	목적 달성	
성주	용암	마월	899-3	전	317	89	2015-12-07 (428호)	사방댐	89	목적 달성	
성주	용암	마월	산28	임야	33,729	1	2015-12-07 (428호)	사방댐	1	목적 달성	
성주	용암	중거	산212	구	2,124	173	2015-12-07 (428호)	사방댐	173	목적 달성	
성주	용암	중거	산86	임야	60,200	337	2015-12-07 (428호)	사방댐	337	목적 달성	
성주	용암	중거	산87	임야	2,807	28	2015-12-07 (428호)	사방댐	28	목적 달성	
성주	용암	중거	767	천	38,497	428	2015-12-07 (428호)	사방댐	428	목적 달성	
성주	용암	중거	688	임야	167	2	2015-12-07 (428호)	사방댐	2	목적 달성	
성주	용암	중거	693	답	283	5	2015-12-07 (428호)	사방댐	5	목적 달성	
성주	수륜	송계	산48-1	임야	48,874	109	2015-12-07 (428호)	사방댐	109	목적 달성	
성주	수륜	송계	산49	임야	149,401	85	2015-12-07 (428호)	사방댐	85	목적 달성	
성주	수륜	송계	산56	임야	64,631	493	2015-12-07 (428호)	사방댐	493	목적 달성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현황			지정해제 고시면적 (㎡)	해제 사유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정 면적 (㎡)	지정년월일 (고시번호)	사업 종류			
성주	수륜	송계	산155	구	2,379	352	2015-12-07 (428호)	사방댐	352	목적 달성	
칠곡 계			52		1,981,181	10,129			10,129		
칠곡	가산	가산	산1	임야	68,501	12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12	목적 달성	
칠곡	가산	가산	산3	임야	57,698	146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146	목적 달성	
칠곡	가산	가산	산4	임야	21,940	222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222	목적 달성	
칠곡	가산	가산	221	임야	2,336	337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337	목적 달성	
칠곡	가산	가산	1224	구	88,279	351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351	목적 달성	
칠곡	가산	가산	산57-7	임야	1,191	62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62	목적 달성	
칠곡	가산	가산	산59-1	임야	426	6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6	목적 달성	
칠곡	가산	가산	산59-2	임야	2,383	410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410	목적 달성	
칠곡	가산	가산	142	전	582	44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44	목적 달성	
칠곡	가산	가산	147	전	498	9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9	목적 달성	
칠곡	가산	가산	150	묘	10,436	82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82	목적 달성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현황			지정해제 고시면적 (㎡)	해제 사유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정 면적 (㎡)	지정년월일 (고시번호)	사업 종류			
칠곡	가산	가산	450-1	임야	248	27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27	목적 달성	
칠곡	가산	가산	1224	구	2,243	4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4	목적 달성	
칠곡	가산	응추	산2	임야	27,646	67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67	목적 달성	
칠곡	가산	응추	13	답	701	13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13	목적 달성	
칠곡	가산	응추	18	답	328	161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161	목적 달성	
칠곡	가산	응추	609	구	6,144	105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105	목적 달성	
칠곡	가산	응추	산4	임야	57,054	12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12	목적 달성	
칠곡	가산	응추	산5-1	임야	17,923	27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27	목적 달성	
칠곡	가산	응추	산117	구	2,013	414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414	목적 달성	
칠곡	동명	송산	1537	구	5,502	521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521	목적 달성	
칠곡	동명	송산	976	답	1,779	4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4	목적 달성	
칠곡	동명	송산	977	답	1,530	17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17	목적 달성	
칠곡	동명	송산	981	답	2,820	410	2015-12-07 (428호)	계류 보전	410	목적 달성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현황			지정해제 고시면적 (㎡)	해제 사유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정 면적 (㎡)	지정년월일 (고시번호)	사업 종류			
칠곡	가산	가산	산92-8	임야	298,389	18	2015-12-07 (428호)	사방댐	18	목적 달성	
칠곡	가산	가산	산94	임야	65,460	10	2015-12-07 (428호)	사방댐	10	목적 달성	
칠곡	가산	가산	산95	임야	23,238	12	2015-12-07 (428호)	사방댐	12	목적 달성	
칠곡	가산	가산	1195-6	임야	231	19	2015-12-07 (428호)	사방댐	19	목적 달성	
칠곡	가산	가산	1196	답	449	160	2015-12-07 (428호)	사방댐	160	목적 달성	
칠곡	가산	가산	1197	임야	1,106	30	2015-12-07 (428호)	사방댐	30	목적 달성	
칠곡	가산	가산	1199	임야	92	1	2015-12-07 (428호)	사방댐	1	목적 달성	
칠곡	가산	가산	1247	구	445	160	2015-12-07 (428호)	사방댐	160	목적 달성	
칠곡	가산	송학	산12-1	임야	349,891	1,407	2015-12-07 (428호)	사방댐	1,407	목적 달성	
칠곡	가산	천평	산11-2	임야	201,153	560	2015-12-07 (428호)	사방댐	560	목적 달성	
칠곡	가산	천평	산11-11	도	3,541	93	2015-12-07 (428호)	사방댐	93	목적 달성	
칠곡	가산	천평	산11-18	임야	6,306	7	2015-12-07 (428호)	사방댐	7	목적 달성	
칠곡	가산	천평	산11-22	임야	2,031	204	2015-12-07 (428호)	사방댐	204	목적 달성	
칠곡	가산	천평	산11-24	도	132	42	2015-12-07 (428호)	사방댐	42	목적 달성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현황			지정해제 고시면적 (㎡)	해제 사유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정 면적 (㎡)	지정년월일 (고시번호)	사업 종류			
칠곡	약목	관호	산49-1	임야	12,366	724	2015-12-07 (428호)	사방댐	724	목적 달성	
칠곡	약목	관호	산49-8	임야	2,843	335	2015-12-07 (428호)	사방댐	335	목적 달성	
칠곡	약목	관호	932-4	천	28,940	9	2015-12-07 (428호)	사방댐	9	목적 달성	
칠곡	약목	관호	산49-10	임야	48,620	411	2015-12-07 (428호)	사방댐	411	목적 달성	
칠곡	약목	관호	932-4	천	28,940	15	2015-12-07 (428호)	사방댐	15	목적 달성	
칠곡	약목	관호	산49-4	임야	73,373	293	2015-12-07 (428호)	사방댐	293	목적 달성	
칠곡	약목	관호	산49-6	임야	15,150	136	2015-12-07 (428호)	사방댐	136	목적 달성	
칠곡	약목	남계	산13-12	임야	59,201	624	2015-12-07 (428호)	사방댐	624	목적 달성	
칠곡	약목	남계	산49-3	임야	160,347	302	2015-12-07 (428호)	사방댐	302	목적 달성	
칠곡	약목	남계	산51	임야	194,564	220	2015-12-07 (428호)	사방댐	220	목적 달성	
칠곡	약목	남계	산64	구	18,270	815	2015-12-07 (428호)	사방댐	815	목적 달성	
칠곡	지천	창평	산20	임야	1,604	17	2015-12-07 (428호)	사방댐	17	목적 달성	
칠곡	지천	창평	산106	구	1,071	39	2015-12-07 (428호)	사방댐	39	목적 달성	
칠곡	지천	창평	13	답	3,227	3	2015-12-07 (428호)	사방댐	3	목적 달성	

경상북도 고시 제2021 - 127호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방지 지정 내역 : 붙임 내역과 같음

2. 사방지 지정 사유 : 2021년 사방사업 시행

3. 사방지 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게재 생략한 사방지 지정 지형도면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사업과 (☎ 054-778-38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사방지 지정 고시 내역서

소 재 지				지목	지 적 (㎡)	지정 고시 면적 (㎡)	소유자 또는 점유자		사업 종류	비 고
시군 구	읍면	리동	지 번				주소	성 명		
계			30 필지		1,522,142	6,040				
포항 계			**3필지**		**9,004**	**474**				
포항 북	흥해	대련	산152	임	7,140	296	포항시 북구 중앙로 363(덕수동)	포항시 산림조합	계류 보전	1차
포항 북	흥해	대련	67	잡	1,157	71	포항시 북구 중앙로 363(덕수동)	포항시 산림조합	계류 보전	1차
포항 북	흥해	대련	1145-1	구	707	107		건설 교통부	계류 보전	1차
경주 계			**7필지**		**542,173**	**1,816**				
경주	건천	화천	산178-1	임야	13,884	592	월성군 건천읍 화천리 2037	이찬우	산지 사방	1차
경주	건천	화천					경주시 성건동 620	이원우	산지 사방	1차
경주	건천	화천					경주시 노동동 140-16	이수우	산지 사방	1차
경주	건천	화천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527 전원마을 404동 1104호	이종철	산지 사방	1차
경주	건천	화천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426-58	이갑우	산지 사방	1차

소 재 지				지목	지 적 (㎡)	지정 고시 면적 (㎡)	소유자 또는 점유자		사업 종류	비 고
시군 구	읍면	리동	지 번				주소	성 명		
경주	건천	화천	2082	유지	218	43	월성군 건천읍 화천리 263	전양호	산지 사방	1차
경주	건천	화천	2663	하천	9,481	46		건설부	산지 사방	1차
경주	외동	활성	산39	임야	422,191	546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315번길16, 103동 2603호(망미동, 더샾파크리치)	김수석	계류 보전	1차
경주	외동	활성	산70	구거	11,507	305	경주시외동읍활성리257-4 (경주시외동읍활성리224)	활성리 마을회 (대표 최현준)	계류 보전	1차
경주	안강	검단	산209 -1	임야	53,752	37	경주시 도지동 9	고대근	사방댐 설치	1차
경주	안강	검단	산211 -1	임야	31,140	247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 196-59	해주견씨 종친회	사방댐 설치	1차
영천 계			**2필지**		**22,607**	**684**				
영천	청통	신원	838	구거	2,886	229		농림축산 식품부	산지 사방	1차
영천	청통	신원	산136 -1	임야	19,721	455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거조길 529-14	장용대	산지 사방	1차
경산 계			**2필지**		**121,059**	**329**				

소 재 지				지목	지 적 (㎡)	지정 고시 면적 (㎡)	소유자 또는 점유자		사업 종류	비 고
시군 구	읍면	리동	지 번				주소	성 명		
경산	남천	송백	산36	임야	53,721	188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251, 207동 304호(성복동, 버들치마을성복자이2차)	신호철	사방댐 설치	1차
경산	남천	송백	산38	임야	67,338	14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251, 207동 304호(성복동, 버들치마을성복자이2차)	신호철	사방댐 설치	1차
영덕 계			**1필지**		**272,265**	**106**				
영덕	창수	삼계	산122	임야	272,265	106	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1길 23-1(효목동)	권달효	산지 사방	1차
청도 계			**4필지**		**234,248**	**1,438**				
청도	금천	임당	114	전	162	77	청도군 금천면 임당동 263	해본준이	계류 보전	1차
청도	금천	임당	116	전	231	26	청도군 금천면 임당동 293	최상기	계류 보전	1차
청도	금천	임당	2123-1	구거	78,814	863		농림축산식품부	계류 보전	1차
청도	매전	남양	산53-10	임야	155,041	472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45길 26(대봉동)	양해권	사방댐 설치	1차
울진 계			**5필지**		**155,762**	**299**				

소 재 지				지목	지 적 (㎡)	지정 고시 면적 (㎡)	소유자 또는 점유자		사업 종류	비 고
시군 구	읍면	리동	지 번				주소	성 명		
울진	북	사계	산57	임야	14,380	179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진산로 90, 501동 1002호(풍덕천동, 진산마을삼성5차 아파트)	주나영	산지 사방	1차
울진	북	사계					경기도 하남시 세미로1길 11, 201동 2204호 (풍산동, 하남힐즈파크푸르지오2단지)	주기영	산지 사방	1차
울진	북	사계					경기도 하남시 세미로1길 11, 201동 2204호 (풍산동, 하남힐즈파크푸르지오2단지)	주환석	산지 사방	1차
울진	북	하당	산35	임야	84,793	58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15길 19, 114동 2702호(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원상	산지 사방	1차
울진	북	하당	산126	구거	132	9		농림축산 식품부	산지 사방	1차
울진	북	하당	98-1	하천	55,495	19		국토 교통부	산지 사방	1차

소 재 지				지목	지 적 (㎡)	지정 고시 면적 (㎡)	소유자 또는 점유자		사업 종류	비 고
시군 구	읍면	리동	지 번				주소	성 명		
울진	북	하당	119	전	962	3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운하로 192, 305호 (송도동,동부강변타운)	양옥휘	산지 사방	1차
울릉 계			**6필지**		**165,024**	**894**				
울릉	북	천부	산65	임야	16,529	301	경북 포항시 북구 삼흥로321번길 135(양덕동)	최인성	사방댐 설치	1차
울릉	북	천부	산124 -9	도로	827	20		국토 교통부	사방댐 설치	1차
울릉	북	천부	산125 -3	구거	39,647	9		국토 교통부	사방댐 설치	1차
울릉	북	현포	119	전	11,326	42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1212-5	보성몽중산다원 영농조합 법인	사방댐 설치	1차
울릉	북	현포	139	전	12,519	65	울릉군 북면 현포리 138	김정숙	사방댐 설치	1차
울릉	북	현포	806	천	84,176	457		국토 교통부	사방댐 설치	1차

◈◈◈

경상북도 공고 제2021- 80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5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 내용

가. 처분대상 및 처분내용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법령위반 내용	행정처분 내용
540121	㈜규림정보통신 (김동기)	경북 경산시 자인면 계남길17길 47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부족)	영업정지(1개월) (2021. 04. 12. ~ 2021. 05. 11.)

나. 처분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등록기준),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다. 처분일자 : 2021. 4. 12.

라. 문 의 : 정보통신과 김승현주무관(054-880-3003, zymopro@korea.kr)

2021년 4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공고 제 2021 - 810호

도로공사 시행허가(변경) 내용 공고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를 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 선 명**	지방도904호선 고경-양남
공사의 종류	고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따른 제3화천교 개체 및 연결도로 정비공사		
구 간	경북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1457-4번지 일원		
공사시행장소	상 동		
착수예정일	2019년 09월	**준공예정일**	당초 : 2021년 06월 30일 변경 : 2021년 12월 31일

사유 : 본 공사 준공기간 변경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기간 연장

경상북도 공고 제2021 - 811호

개각 공인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경상북도 공인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개각 공인 등록 및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 **개각공인**

연번	공 인 명	인 영	최초사용 년 월 일	등록사유
1	영천소방서장의인	 2.1cm정방형	2021.4.12.	공인 노후로 인한 일부 파손에 따른 폐기로 인한 개각 필요 소방행정과-3870 (2021.4.6.)

□ **폐기공인**

연번	공 인 명	인 영	폐기년월일	폐기사유
1	영천소방서현장대응단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정방형	2021.4.1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의거 직제개편 소방행정과-3885 (2021.4.6.)
2	영천소방서장의인	 2.1cm정방형	2021.4.12.	공인 노후로 인한 일부 파손에 따른 폐기 소방행정과-3870 (2021.4.6.)

경상북도 공고 제2021- 812호

경상북도 문화재수리업등 등록공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7조,「같은 법률 시행령」제12조 및「같은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수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 후 이를 공고합니다.

연번	등록연월일	등록번호	등록업종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재지
1	2021. 4. 8.	제01-16-0075호	보수 단청업	㈜ 금 원 대표 엄 소 윤	경북 안동시 제비원로 157-2, 2층 205호 (당북동, 센트럴64)

2021. 4. 12.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공고 제2021-815호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재난시 사용·대부료 부담 완화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등으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1) 사용·대부료 감면대상 확대 신설(안 제32조제4항제1호·제2호 신설)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에 있는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한 경우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함.

2) 사용·대부료의 감액비율 확대 개정(안 제34조)

-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전면감액

3) 사용·대부료의 분할납부 횟수 확대 개정(안 제35조제2항제1호~제3호)

- 분할납부시 연 4회 범위에서 연 6회 범위로 횟수를 확대함.

나. 조례내용 개선·보완사항 정비

1) 공유재산심의회 업무사항 정비(안 제5조제2항)

2) 사용·대부료 부과·징수기준 정비(안 제31조제3항·제4항)

3) 공유재산 감정평가업자 용어 정비(안 제30조제2항·제4항, 제66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 주 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회계과

- 연락처: Tel 054-880-2933, Fax 054-880-2929 이메일: joanne0610@korea.kr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대부료의 요율)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대부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가.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나.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나.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다.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라.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도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가.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마. 상시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바. 「초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제30조제2항 단서 중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2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공용면적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1. 건물면적: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면적: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을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할”로 하며, 같은 호 가목 3) 중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

분 중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을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75로 할”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터 감면할”을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할”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제13조제6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의2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로, “대부”를 “사용·대부”로 한다.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영 제17조제7항제2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대부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영 제17조제6항제2호·제4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
2. 영 제17조제6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대부료의 조정) 영 제34조에 따라 감액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연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연 4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연 6회 분납

제66조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생 략)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1.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삭 제〉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일반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삭 제〉
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심의 신청 당시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일반 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심의 신청 당시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의 재산	

현 행	개 정 안
다. 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심의 신청 당시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제28조(대부료의 요율)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대부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가.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나.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나.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다.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경우 3.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도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단,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도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가.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마. 상시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

현 행	개 정 안
	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바. 「초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제30조(채광물채취료 등) ① (생 략)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③ (생 략)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채광물채취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2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감정평가법인등----- ---------- ---------- ---------- --.

현 행	개 정 안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② (생 략)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공용면적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1. 건물면적: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면적: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현 행	개 정 안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당해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층의)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당해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층의) 총 전용면적〕 ○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당해부지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용·공공면적 합계) ÷ 당해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삭 제〉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 제3항에 따른 ----------.

현 행	개 정 안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른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할 ---------.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 중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사업	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나. ~ 아. (생 략)	나. ~ 아.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2.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75로 할 ---------.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려는 사업(「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	가.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현 행	개 정 안
소재를 생산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및 사회간접자본이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3. ----------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할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6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아. ----------제13조의2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 사용·대부----------.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7조제7항에 따라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재산 사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경한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④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영 제29조제1항제19호ㆍ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재산 대부료를 100분의 50으로 감경한다.	④ 영 제17조제7항제2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대부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영 제17조제6항제2호·제4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 2. 영 제17조제6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그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으로 감액징수한다.	제34조(대부료의 조정) 영 제34조에 따라 감액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제35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납부기한----------.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	② ----------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자율을 적용한 이자(이하 “행정자치부장관 고시 이자”로 한다)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10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1. --- 200만원 이하: 연 2회 ---- 2. --- 300만원 이하: 연 4회 ---- 3. ---------: 연 6회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 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 ---------- ---------- ---------- ---------- ----------. ---------- ---------- 감정평가법인등----------.

관련법령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 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

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감면)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2. 제13조제3항제21호·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의 100분의 100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이 경우 대부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다.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2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제13 조제3항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26.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제29조제1항제20호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사용료 등 부과·징수) ①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부과·징수를 하는 경우 〈별표 3〉의 내용을 참고한다.

□ 기타법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개정 2020. 4. 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개정 2020. 12. 22.〕**

제13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개정 2020. 8. 5..〕**

제19조(국유·공유재산의 임대 등) ⑩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0. 8. 5.〉

⑪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⑫ 제10항 및 제1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술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2017. 11. 28.**〕

제18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인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ㆍ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減免)할 수 있다.

1.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국·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2.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 2017. 12. 26.〕**

제43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④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기준 및 요건,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혁신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국가 및지방자치단체는「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제47조의3에 따른 발전지원센터, 그 밖에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1- 817호

측량업 등록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상 호 (대표자)	업 종 (사업자번호)	등록번호	소 재 지	등록일
범하이엔씨㈜ (박지나)	공공측량 (275-81-02071)	03-001270	경북 문경시 매봉1길 33, 상가동 203호(모전동, 매봉마을)	2021.4.9.

경상북도 공고 제 2021 -818호

「2021년 경상북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참가분임조 모집 공고

기업의 경영 성과와 직결되는 원가절감, 품질 및 생산성향상, 고객 만족 등에 대하여 자주적인 개선활동으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한 우수분임조를 발굴· 포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1년 경상북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 계획 및 참가 품질분임조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추진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품질경영의 지원)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4(품질경영에 관한 포상 및 지원)

○ 2021년도 국가품질·제품안전 유공 포상요령 공고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73호(2021.3.5.)

2. 대회 개요

○ 대회명칭 : 2021년 경상북도 품질분임조경진대회

○ 일　　시 : 2021. 6. 17(목) * 개회식 10:00~

○ 장　　소 : 구미코(경북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49)

○ 주최 · 주관 · 후원 : 경상북도/한국표준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산업통상자원부

※ 최우수상이상 수상 분임조는 전국대회 참가자격 부여

【 제47회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

■ (기간) 2021. 8. 23.(월) ~ 8. 27.(금) ■ (장소) 울산전시컨벤션센터
■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울산광역시 ■ (주관) 한국표준협회
■ (대상) 각 예선대회에서 선발된 분임조, 기업군 추진본부 및 사업장대회에서 선발된 분임조

3. 참가대상 및 부문

○ 참가대상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공기업, 군부대 포함), 해외법인 소속 분임조

○ 참가부문(15) : 현장개선, 설비(TPM), 보전경영(EAM), 6시그마, 서비스, 사무간접, 환경품질, 안전품질, 상생협력, 자유형식, 창의개선, 제안사례, 스마트공장, 에너지・기후변화, 사회적가치창출

4. 신청안내

○ 신청자격 : 한국표준협회에 등록된 분임조(사업장 당 각 부문별 1팀 제한)

○ 신청기간 : 2021. 5. 21.(금) 18:00까지

○ 접 수 처 : 한국표준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384-1564)

※ 메일 접수, 문의 : (jhyoun@ksa.or.kr, 윤정훈 위원)

○ 신청서류

신청서류 (제출자)	필수여부	접수마감	비 고
참가신청서 1부 (출전분임조)	필수	'21. 5. 21.	별첨1 서식
발표원고 1부 (출전분임조)	필수		발표원고 작성요령 참고

5. 발표요령

○ 발표시간 : 15분(연구 부문 : 20분) + 질의응답 10분

○ 발표방법 : 자유발표(단, 중소기업은 아래 발표형식을 따름)

〈 중소기업 발표형식 기준〉

■ 제출한 발표원고를 그대로 사용하여 발표
※ 발표원고를 세로형식에서 가로형식으로 변경은 가능
■ 제출한 발표원고 내용을 그대로 파워포인트 등 발표도구에 옮겨 발표
※ 심사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상단 또는 하단의 간략한 설명은 허용

※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 정부 단계별 운영지침 준수 적용

○ 발표내용 : 개별 품질분임조의 현장활동 개선 사례*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개선 완료한 사례에 한함

〈 가 · 감점 운영기준(기술표준원 세부운영지침) 〉

■ <u>감점기준</u> : 발표시간 30초 초과 시부터 30초당 0.5점 감점
(동영상 상영시간 포함)
발표부분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일 경우 5점 감점

■ <u>가점기준</u> : 출전분임조원 전원 참석 시 0.5점, 70%이상 참석 시 0.2점

※ 가점기준 적용 없이 진행 예정

6. 심사방법

○ 발표심사 : 100점 (심사위원 : 학계, 업계, 협회 등 전문가 5명 이내)

○ 부문별로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해외법인으로 구분 평가

○ 심사위원 5인의 평점(100점 만점 기준) 중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결정

※ 세부기준은 국가품질상 포상운영계획 참조

7. 포 상

○ 우수 분임조 시상(폐회식, 경상북도지사상)

► 대 상 : **경상북도지사상 수여**, 전국대회 출전자격 부여

► 최우수상 : **경상북도지사상 수여**, 전국대회 출전자격 부여

► 우 수 상 : **경상북도지사상 수여**

※ (수상분임조 선정) 최우수상 · 우수상 수상 규모는 전국대회 진출팀 선정기준을 고려 심사위원의 점수로 결정

8. 전국대회(본선) 진출팀 선정

분야 및 부문별 참가 팀 수			추천팀수 (선발비율)
대기업 · 공공기관	중견기업	중소기업 · 해외법인	
1~3	1~2	1~2	1
4~6	3~4	3	2
7~9	5~6	4~5	3

※ 부문별 단독 출전일 경우 90점 이상만 우수 분임조로 선발

9. 발표원고 작성요령

1) 작성 형식

○ 규 격 : A4(상하좌우 여백 18mm)

○ 형 식 : 세로방향, PDF파일

- 책자로 제작 후 심사위원에 사전배포 및 경진대회 참가자 배포용으로 활용 목적

○ 페이지 : 표지 및 요약서는 페이지 수에서 제외

- 개선사례 : 15페이지 이내(단, 연구부문은 40페이지 이내)

- 제안부문 : 10페이지 이내(요약서 생략)

○ 제 출 : PDF 형식

○ 요약서 : 1페이지(단계마다 중요사항 요약 형식으로 작성 / 원고 뒷부분 붙임)

2) 작성 요령 : 포상운영계획 참조(p89-p99)

※ 세부기준은 국가품질상 포상운영계획 참조

10. 문의처

○ 신청·접수 문의 : 한국표준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053-384-1564)

※ 향후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 대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첨 1] 접수 이메일_jhyoun@ksa.or.kr

2021년 경상북도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참가신청서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 해외법인

신청사례영역						
회사(공장)명			사업자번호			
주 소	(우:)					
주관부서 (사무국)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직 위		휴대전화			
	부 서		이메일			
분임조등록 번호	Q	분임조명		분임조원수 (조장포함)	명	
분임조장	성 명		회사전화			
	직 위		휴대전화			
	부 서		이메일			
발 표 자	성명/직위		휴대전화			
외부지도위원	소 속		성 명			
발표제목						
발표내용 요약						

위와 같이 「2021 경상북도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자 (인)

한국표준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귀중

경상북도 공고 제2021- 819호

신문 등 직권등록취소 공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해당 신문 등의 발행을 중단한 신문을 직권등록취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신문 등 직권등록취소 대상 : 인터넷신문 34개사

○ 근 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 사 유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해당 신문 등의 발행을 중단

○ 취소대상 : 붙임과 같음

2. 직권등록취소일자 : 2021. 4. 7.

3. 직권등록취소에 따른 제한사항 및 준수사항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 취소된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되거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 책임자는 향후 2년 동안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되거나 기사배열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 만일, 발행인·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의 명의로 등록 되어있는 다른 신문, 정기간행물 등이 있는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의거 1개월 이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 본 처분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신문 등을 발행하게 될 경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취소된 신문 등의 발행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발행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그 취소된 신문, 정기간행물 등의 명칭으로 신문 등을 발행 및 등록 할 수 없습니다.

4.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북도 대변인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4-880-4312)

[붙임]

직권등록취소 대상 신문

연번	제 호	등록번호	등록일	발행인 (편집인)	발 행 소
1	상주조은방송	아00008	05.11.07	박종구	경상북도 상주시 삼백로 164
2	경북동해뉴스	아00045	07.04.30	문영희 (정태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안로 4290 (구평리)
3	안동포커스	아00071	08.06.03	김영미	경상북도 안동시 중평길 8 (용상동)
4	문경조은방송	아00074	08.07.15	박종구	경상북도 상주시 삼백로 164
5	김천조은방송	아00107	09.11.23	박종태 (박종구)	경상북도 상주시 삼백로 164
6	한국보건복지신문	아00108	09.12.01	주경선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중앙로 24, 306호 (형곡동)
7	안동인터넷방송	아00111	09.12.24	배문환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938 (용상동)
8	강산인터넷방송	아00112	10.01.20	강창섭	경상북도 안동시 태사2길 28 (북문동)
9	김천섹션뉴스	아00125	10.04.19	이성훈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시장길 40 (부곡동)
10	영주문화인터넷신문	아00148	10.09.28	김성자	경상북도 영주시 원당로207번길 10 (하망동,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1	경북태권도방송	아00164	10.12.27	최정일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동서대로 103 (동부리,광진알미늄)
12	영남문화관광뉴스 인터넷방송	아00171	11.02.16	김태수	경상북도 안동시 법상길 41-12 (법상동)

연번	제 호	등록번호	등록일	발행인 (편집인)	발 행 소
13	경북사회복지뉴스	아00173	11.03.11	조의진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서로 23, 3층 (형곡동)
14	경산교육&복지신문	아00187	11.07.27	국수경	경상북도 경산시 백자로 119, 2층 (사동)
15	군위인터넷신문	아00194	11.09.19	정철진 (정영애)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중앙3길 15-14 (서부리)
16	아동청소년신문	아00201	11.12.07	오경윤 (김도은)	경북 구미시 봉곡북로9길 24-1 (봉곡동, 대한예수교장로회구미1교회)
17	i문화신문	아00211	12.02.16	임용규	경북 안동시 용상북1길 6, A-109호 (용상동, 에이스아울렛)
18	정언신문	아00229	12.08.24	이경수	경상북도 구미시 상사서로 113-3 (사곡동, 사곡굿팰리스)
19	힐링과만남	아00234	12.10.16	황정현 (박영숙)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북로 26(옥계동) 403호
20	안동보육뉴스	아00235	12.10.08	임기숙 (이선영)	경상북도 안동시 어가골길104 (옥동) 리치빌상가 B동-2(1층)
21	경주교육복지신문	아00245	12.12.24	정태민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작원5길 26 금호아파트 101동 101호
22	경주복지뉴스	아00251	13.02.26	박선미	경상북도 경주시 원화로 368(동천동)
23	제이제이뉴스	아00256	13.03.14	김병철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31길 15 (옥계동) 공단매디파크 802호
24	예천군민뉴스	아00281	13.10.25	강성화	경북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2 (서본리, 경북광고)
25	아이사랑뉴스닷컴	아00301	14.03.12	이명진 (김건호)	경상북도 칠곡군 달오2길 92

연번	제 호	등록번호	등록일	발행인 (편집인)	발 행 소
26	맑은 인터넷신문	아00317	14.06.05	박종훈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 88
27	알배기미디어	아00342	14.12.18	심영준 (양성룡)	경상북도 경산시 대구대로 201, 1206호 (대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호관)
28	신도시 inews	아00344	14.12.17	김영민 (정연우)	경상북도 예천군 시장로 106, 3층
29	유림뉴스	아00353	15.03.03	김희철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243 계림황제타운, 202호
30	경북연합신문	아00357	15.04.02	정종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40번길 38,104동1903호 (롯데낙천대아파트)
31	뉴서치울진	아00371	15.06.17	엄문수	경상북도 울진군 중밤터1길 21-12
32	영주투데이뉴스	아00395	15.11.09	문두만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인삼로 26
33	경북땡큐뉴스	아00449	17.12.28	김정만	경북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528 (죽도동), 3층
34	티케이저널 (TKjournal)	아00471	18.06.18	정창구	경북 구미시 오태동 35

경상북도 공고 제2021-823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을 신규등록하고 같은 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4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등 록 번 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등록일자
540399	주식회사 구주전력 (오현택)	경북 안동수 석수1길 5(안기동)	2021.4.9

끝.

경상북도 공고 제2021 -824호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경상북도 공인조례 제8조에 따라 전자 공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 **등록공인(전자공인)**

연번	공 인 명	인 영	최초사용 년 월 일	등록사유
1	영천소방서장의인	영천소방 서장의인	2021.4.12.	소방행정과-3870 (2021.4.6.)
		2.1cm정방형		

□ **폐기공인(전자공인)**

연번	공 인 명	인 영	폐기년월일	폐기사유
2	영천소방서장의인	 2.1cm정방형	2021.4.12.	소방행정과-3870 (2021.4.6.)

◈◈◈

구미시 고시 제2021 - 68호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따라 구미시 고시 제2020-188호(2020. 07. 02)로 고시한 구미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의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 4. 12.

구 미 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사유

○ 원평동 도시지역 내 소로3-2호선 공사완료구간 반영

○ 금회 정정고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최초실효고시(구미시고시 제2020-188호, 2020.7.2)와 도시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 정정고시(구미시고시 제2020-221호, 2020.8.18.), 추가정정고시(구미시고시 제2020-284호, 2020.11.9.)내용과 동일함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조서(정정사항)

□ 도로

[당초]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3	2	6	국지 도로	154.0	중1-4, 원평964-606	중2-176, 원평36-6		1974-05-11 (경북고114)	실효

[정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154.0	중1-4, 원평964-606	중2-176, 원평36-6		1974-05-11 (경북고114)	
변경	소로	3	2	4.6 ~ 6	국지 도로	29.0	중1-4, 원평964-606	원평 964-369			미집행 구간의 실효

다. 실효일자 : 2020. 7. 1.

라. 실효사유 : 도시계획시설사업 미 시행

마. 지형도면 : 게재 생략

바. 관계도서는 구미시 도시계획과(☎ 054-480-540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경산시 고시 제2021-63호

경산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경산시 고시 제2020-130호(2020.7.2)로 고시한 경산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고시, 경산시 고시 제2020-271호(2020.12.28.) 경산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에 오기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2일

경 산 시 장

1.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11	12	국지도로	665	소로1-대임15	중로3-1(임당동 655)	일반도로	경상북도고시 제289호 (1985.12.19)	-
변경	중로	3	11	12	국지도로	665	소로1-대임15	중로3-1(임당동 655)	일반도로	경상북도고시 제289호 (1985.12.19)	미집행 구간 실효
기정	소로	2	압3	8	국지도로	520	대로2-7(부적리 579-2)	중로3-17(조영동 336-1)	일반도로	경상북도고시 제110호 (1974.5.11.)	
변경	소로	2	압3	8	국지도로	520	대로2-7(부적리 579-2)	중로3-17(조영동 336-1)	일반도로	경상북도고시 제110호 (1974.5.11.)	미집행 구간 실효

나. 공간시설

(1) 녹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1	대로1-2호선변시설녹지	완충녹지	점촌동 산44-1 일원	958	-	958	경상북도고시 제99-183호 (1999.8.3)	-
변경	51	대로1-2호선변시설녹지	완충녹지	점촌동 산44-1 일원	958	감) 244	714	경상북도고시 제99-183호 (1999.8.3)	미집행 구간 실효

다. 공공 · 문화체육시설

(1) 학교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무학중고등학교	고등학교	하양읍 도리리 76 일원	32,421	-	32,421	경상북도고시 제14호 (1988.1.21)	-
변경	3	무학중고등학교	고등학교	하양읍 도리리 76 일원	32,421	감) 3,541	28,880	경상북도고시 제14호 (1988.1.21)	미집행 구간 실효

2. 도시 · 군계획시설(녹지,학교) 결정(정정)조서

가. 공간시설

(1) 녹지

(당초) 경산시고시 제2020-271호(2020.12.28.)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8	공업지역변 녹지	완충녹지	대로2-진3 (신상리1184-14) ~ 대로2-진13	72,252	-	72,252	경고제35호 (1990.03.03)	-
변경	28	공업지역변 녹지	완충녹지	대로2-진3 (신상리1184-14) ~ 대로2-진13	72,252	감) 671	71,581	경고제35호 (1990.03.03)	미집행 구간 실효

(정정)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8	공업지역 변 녹지	완충녹지	대로2-진3 (신상리1184-14) ~ 대로2-진13	48,615	-	48,615	경고제35호 (1990.03.03)	-
변경	28	공업지역 변 녹지	완충녹지	대로2-진3 (신상리1184-14) ~ 대로2-진13	48,615	감) 671	47,944	경고제35호 (1990.03.03)	미집행 구간 실효

나. 공공 · 문화체육시설

(1) 학교

(당초) 경산시고시 제2020-130호(2020.7.2.)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	압량초등학교	초등학교	압량면 부적리 601 일원	17,290	-	17,290	경상북도고시 제289호 (1985.12.19)	-
변경	6	압량초등학교	초등학교	압량면 부적리 601 일원	17,290	감) 530	16,760	경상북도고시 제289호 (1985.12.19)	미집행 구간 실효

(정정)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	압량중학교	초등학교	압량면 부적리 601 일원	17,290	-	17,290	경상북도고시 제289호 (1985.12.19)	-
변경	6	압량중학교	초등학교	압량면 부적리 601 일원	17,290	감) 530	16,760	경상북도고시 제289호 (1985.12.19)	미집행 구간 실효

3.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정정 고시 사유

-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학교) 누락 및 오기 정정

4. 실효일자(효력발생일) : 2020년 7월 1일

5. 실효사유 : 도시계획시설사업 미 시행

6. 지형도면 : 별첨

7. 관계도서는 경산시 도시계획과(☎ 053-810-551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새바람 행복 경북!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름 청렴세상